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가단40240(본소), 2018가단5274444(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건)]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양승동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092,283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5.부터, 나머지 19,092,283원에 대하여는 2020. 4. 24.부터 각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6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6,917,2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6,097,952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66,097,952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2017. 8. 5.경 서울 용산구 C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8. 1. 6.까지
- 공사금액 411,000,000원
- 지체상금율은 1/1,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8. 4. 2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9,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미완성한 부분, 하자가 발생한 부분, 피고가 자기 비용으로 시공한 부분, 미시공 부분, 변경시공 부분 등에 해당하는 공사비(이하 통틀어 ‘하자보수비’라고 한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을 제8호증)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30,371,483원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8호증,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쌍방 신청한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 취지의 사실조회회신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2,12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25,717,216원을 더한 46,917,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로, 하자보수비 43,353,952원(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체적인 청구원인으로 함)과 지체상금 42,744,000원을 더한 86,097,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특정 - 2,120만 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120만 원(411,000,000원 - 389,800,000원)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일부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추가공사대금 25,717,216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공사대금이 25,717,216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2,120만 원 남아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 지체상금1) : 2018. 1. 7.부터 2018. 4. 20.(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사용승인일까지2))까지 104일간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42,744,000원(411,000,000원 × 0.001 × 104일)
- 하자보수비 30,371,483원

위와 같은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체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책임 있는 지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지체일수 104일 중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순수한 피고 측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측의 설계변경 등이 일부 공사의 지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주 1)에서 인용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지체상금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29,920,800원(42,744,000원 × 70%)만 인정한다.

또 하자보수비의 특성과 관련하여 피고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최초 감정인이 감정한 금액인 43,353,952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11,000,000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을 제8호증)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그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것처럼 위 견적서(을 제8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비 30,371,483원만 인정한다.

이러한 하자보수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과 그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는 없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쌍방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결국 앞서 인정한 금액을 정산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39,092,283원(29,920,800원 + 30,371,483원 - 2,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5.부터, 나머지 19,092,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결론

본소: 원고 패소

반소: 피고 일부승소(39,092,283원 인용)

판사 맹현무

1)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참조).

2) 감정결과 미시공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나 피고가 사용승인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특정하였고, 이러한 종기의 특정에 관하여 원고의 특별한 의견은 없음